의료분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

이 콘텐츠에서는 의료분쟁의 개념,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및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와 그 사례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분쟁 1
1. 의료분쟁의 발생 4
1.1. 의료분쟁 알아보기 4
1.1.1. 의료분쟁의 개념과 해결 방법 4
2. 의료분쟁 대비하기 8
2.1. 의료사고 입증자료 확보 8
2.1.1. 진료기록부 요청 및 확보 8
2.2. 의료분쟁 법률지원 및 피해구제 9
2.2.1. 의료분쟁 상담받기 9
2.2.2. 의료분쟁 법률지원 요청 11
2.2.3.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12
3. 의료분쟁 해결하기 15
3.1.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기 15
3.1.1.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15
3.1.2.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사례 16
3.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19
3.2.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19
3.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 23
3.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26
3.3.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29
3.3.1.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 29
3.3.2.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 30
3.4. 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33
3.4.1.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소송 청구 33
3.4.2.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소송 사례 34

1. 의료분쟁의 발생

1.1. 의료분쟁 알아보기

1.1.1. 의료분쟁의 개념과 해결 방법

의료분쟁은 의료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분쟁의 개념

▪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

√ 약사·한약사

의료행위의 특수성

▪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침습적 의료행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2019), 7면·12면 및 한국소비자원,『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2021), 6면 참조).

구분	내용
침습(侵襲)성	의료행위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절제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구명(救命)성	의료행위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감소함
예측 불가능성	인체의 다양성에 따라 어떠한 의료행위가 시행될 때 환자의 인체의 특수성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음
재량성	의료행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 경과를 살피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전문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는 진단이나 약 처방, 수술 필요성 등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지식이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정보의 편중성	의료행위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의료인이 관리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발생

의료분쟁의 해결

의료분쟁은 합의·조정·중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1조·제733조, 「중재법」 제3조제1호,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제234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25면·32면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제도소개 참조]

구분		내용
합의		▪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인 합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조정		**▪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 **▪ 조정은 다음의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소송	민사 소송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함
	형사 고소·고발	▪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고발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Q.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합의'한 후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합의 이후에 배상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서울고등법원 1970. 5. 29. 선고 69나2729 판결)에 따르면,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44면·45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해결 업무 비교

▪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의료사고의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의료사고감정단을 운영하며 조정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다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분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근거		「소비자기본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설립 목적		√ 소비자 권익 증진 √ 물품, 용역 등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업무 개시		1999.4.9.	2012.4.8.
절차		**상담→피해구제(합의권고)→분쟁조정**	**상담→분쟁조정**
업무 대상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없음	사망 또는 1급 장애 사고만 자동 개시 (이외 사건은 병원의 개시 동의 필요)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의료사고감정단 운영**
		√ 의료사고 √ 의료사고 이외 분쟁(진료계약 해제·해지, 진료비 등)	의료사고에 한정
		수수료 부과 없음	**수수료 부과**
	기타	√ 의료사고 피해예방 활동 √ 소송지원제도 운영 √ 안전·거래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 정책연구, 교육·정보제공	√ 의료사고 예방 관련 연구·교육·홍보 √ 손해배상 대불제도 운영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운영 √ 수탁 감정(법원, 검찰, 경찰 등)

<출처: 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2021), 17면>

※ 피해구제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분쟁 대비하기

2.1. 의료사고 입증자료 확보

2.1.1. 진료기록부 요청 및 확보

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세요.

진료기록부 열람·복사 신청

▪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전단).

▪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함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적정시기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17면·18면).

▹ 모든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요청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22조제1항).

√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에 따라 선 기록 후 행위, 선 행위 후 기록 등의 방식으로 병행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때에 따라 사본을 요청하는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진은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또는 수정 시 추가 기재 전 또는 수정 전 원본을 보관해야 하고 환자는 수정 전 원본과 추가 기재 또는 수정된 기록 모두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제1항 참조).

▹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 요청

√ X-RAY, CT, MRI, 초음파 등의 촬영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본도 요청

▹ 진단서, 소견서 등의 사본 확보

√ 환자 치료과정에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그 진단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요청

※ 진료기록부 확보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의료소비자연대 홈페이지-의료사고상담센터-의료사고 대응절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90조).

의료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세요.

▪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만나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환자의 예후는 어떠한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15면·16면).

▪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하거나 사고경위와 진행경과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15면·16면).

▪ 의료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득(자격증 소지 여부, 사업자등록, 소득세납부실적 등)
사고발생 의료기관	피신청인(피고) 특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주치의의 이름 및 전공, 치료받은 내용, 처음 치료받은 일시 및 장소, 의료사고 발생 추정일시, 사고 전후의 의료기관 및 치료의사, 치료비 면제 여부 등
진료 받은 이유	의료기관에 가게 된 동기
기왕증, 과거력, 과민반응 유무	현재의 증상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기왕증, 과거력, 과민반응 등에 의한 것인지 판단 자료
설명의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설명, 경과설명, 위험설명을 하였는지 확인, 수술이나 치료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 측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파악(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여부),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몇 분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함
피해정도	**(상해)** 신체의 일부에 상처가 있는 등 외형적 이상, 청력 이상, 이·입속·턱 이상, 실명·시야협착·시력저하, 사지·허리 등의 운동기능 장애, 식물인간·부전마비·뇌 등 이상, 신장·폐·신장 등 장기이상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완치되었는지 혹은 더 치료해야 하는 지,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지를 확인 **(사망)** 사망일시, 사망원인, 부검일시, 부검장소,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의료사고 인지시점	의료사고를 언제, 누구로부터 처음 알게 되었는 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산정에 중요함
주치의로부터 들은 내용	환자 측이 의료인을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의료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
의료과실로 추정하게 된 이유	의료사고 전후 모순된 의사의 설명, 의료진들의 이상행동 등
증거자료 존부	진료기록, 방사선 필름, 진단서, 부검감정서, 처방전, 수사기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세납세증명서 등
해결방안	사과 및 치료비 면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행정기관 고발 등 환자 측의 요구
가족관계	손해배상청구시 상속분,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 데 파악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56면>

2.2. 의료분쟁 법률지원 및 피해구제

2.2.1. 의료분쟁 상담받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조정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상담
- 의료사고 감정
-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운영
-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신청 방법**
>
> · 전화상담(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
> · 온라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 · 방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 부산지원
>
> · 우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 상담센터

> ※ 그 밖에 의료분쟁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신청 및 절차

▪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 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전국 소재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상담신청).

> ※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신청 방법**
>
>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
> · 인터넷 상담:㎓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www.ccn.go.kr)
>
> ·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서울강원지원 방문상담실

▪ 소비자상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상담신청-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 ※ 소비자상담센터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상담사례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상담조회-모범상담 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2. 의료분쟁 법률지원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사무를 서비스하는 법률구조 복지기관입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공단소개 참조).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의료사고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3조 본문 및 별표 1).

>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 방법**
>
> · 전화상담: (국내)☎ 132, (해외)☎ 82-54-132
>
> · 인터넷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 √ 국내 거주국민의 상담의 경우 하루 70건으로 제한
>
> · 방문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전국의 가까운 사무실 예약 후 이용
>
> · 화상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민사·가사사건 등과 형사사건 처리절차로 나뉩니다. 각각의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법률구조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빈곤, 법의 무지(無知)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법률구조기구입니다(「변호사법」 제84조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 사회소외계층(경제적 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국제법상 난민, 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법률상담·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참조).

※ 법률구조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6511)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및 구비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사업소개-법률구조사업소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3.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한국소비자원소개).

▪ 한국소비자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 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 소비자의 권익 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피해구제 신청 및 절차

▪ 피해구제는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절차안내).

▪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소비자상담을 먼저 진행한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의 방법으로 접수

√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

· 방문신청: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강원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방문상담실

· 우편신청: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 팩스신청: ☎ 043-877-6767

·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www.kca.go.kr)

▪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절차안내>

Q. 한국소비자원은 모든 사건에 대해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한가요?

A.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 제59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다음과 같은 경우는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의료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의료서비스 등에 따라 발생한 피해**인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거나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한국소비자원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의료분쟁 해결하기

3.1.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기

3.1.1.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한국소비자원소개).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

조정절차 개시 조건

▪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참조).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의료분쟁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와 중복 진행은 불가합니다.

조정의 처리 및 절차

▪ 의료분쟁 조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순서	절차	내용
1	조정요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함
3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로 진행
4	분쟁조정회의 개최	상임위원을 포함한 3~11명의 위원이 사건 심의·의결
5	조정결정	**분쟁조정 내용을 양 당사자에 통지** **양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 통보해야 함**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

조정 처리 기간

▪ 분쟁조정 개시 요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 참조).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조정의 법적 효력

▪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조정이 성립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Q.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2.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사례

조정 사례를 통해 의료분쟁 해결과정을 확인하세요.

자궁절제술 중 요관손상 발생에 따른 조정 사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자궁절제술 중 요관손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 결정 사례-보건/의료)

구분		내용
사례		1. 환자는 의료진이 운영하는 병원 산부인과에서 거대 자궁근종 제거를 위해 복식전자궁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이후 질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함 2. 환자는 병원 산부인과를 거쳐 같은 날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CT 소견에서 요관 손상이 확인되어 내시경으로 우측 신장에 경피적신루설치술 및 요관 스텐트 삽입 시술 후 퇴원함 3. 환자는 요관 스텐트를 제거하고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를 통해 추시 관찰을 받음 4. 환자가 이 사건과 요관 손상으로 의료진이 운영하는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본인부담금)는 총 1,721,720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수술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혈관으로 오인하고 요관을 결찰하여 요관 손상, 이로 인해 근무와 육아에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후유증 등 피해가 발생한바 손해배상(1,300만원)을 요구
	피신청인 (의료진)	요관내시경 검사에서도 요관의 뚜렷한 손상 부위 없이 단지 봉합사의 결찰만 확인돼 봉합사 제거 후 요관 스텐트 삽입하는 이 사건 시술만으로 요관 손상이 완치되었는데 이는 요관 손상이 미세했기 때문으로 요관 손상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우나 불가피한 합병증이므로 환자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주장
책임 유무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제한	이 사건 수술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이며 환자의 경우 자궁근종의 크기가 커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의료진이 환자의 요관 손상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시술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한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비추어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조정결과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3,206,000원을 지급

아토피 피부염으로 한약 복용 후 상태 악화에 따른 조정 사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한약 복용 후 상태가 악화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 결정 사례-보건/의료)

구분		내용
사례		1. 환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함 2. 한약을 복용하던 중 얼굴과 가슴 부위에 열감 및 발적, 소양감 등과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하였으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한약 복용을 지속함 3. 이후 상태가 더욱 악화하여 한약 복용 중단 및 조정 외 A병원 등에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한 후 호전됨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한약 복용 전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피신청인 (의료진)	환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및 호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으므로, 환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
책임 유무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제한	이 사건의 진행 경위, 의료의 불확실성 및 한방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조정결과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3,758,000원을 지급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조정 사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 결정 사례-보건/의료)

구분		내용
사례		환자는 백내장 및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에서 양안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으나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 시력 저하로 안경 착용 중에 있으며 야간 심한 빛 번짐을 호소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야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상 이 사건 수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입은 손해배상 요구
	피신청인 (의료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소명 의사가 없음
책임 유무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료진은 수술과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인정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제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환자의 나이, 진행 경위 및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
조정결과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

※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사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다양한 조정 사례는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분쟁조정 결정 사례-보건/의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3.2.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조정 신청 대상

▪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의료분쟁 당사자는 다음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의료분쟁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 변호사
- 의료분쟁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 예외적 가능)

조정 신청 기간

▪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3항).

-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Q. 2013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 **A.** 네, 법의 시행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66호, 2011. 4. 7. 제정 2012. 4. 8.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48면>

조정 신청 방법

▪ 조정신청은 서면신청과 방문신청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신청, 팩스신청도 가능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27면·28면).

▪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지 제1호 서식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사본
- 본인 통장사본
- 조정 신청서 별지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환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 조정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및 구비서류 발급처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필수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처리 및 절차

조정 절차

▪ 의료분쟁 조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20~21면).

순서	절차	내용
1	조정 신청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
2	조정절차 개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로 조정절차 개시(조정절차 자동 개시 사유 제외)
3	감정부 조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 혹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 요구 등
4	감정서 작성·송부	**조정절차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5	조정기일 진행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출석하여 발언(조정절차 비공개 원칙)
6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절차 중단 및 합의한 내용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7	조정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 해야함(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 조정절차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정절차 자동 개시

▪ 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 전단).

-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장애의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조정 수수료

▪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 조정중재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중재신청금액	수수료	수수료 감면
5백만원 이하	22,000원 <기본수수료>	※ 장애인 ①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②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면제 ·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첨부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원본
5천만원 초과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수수료 안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부과됩니다. 수수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수수료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의 법적 효력

▪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Q.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및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손해배상금대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

조정 사례를 통해 의료분쟁 해결과정을 확인하세요.

(정형외과) 무릎 연골수술 후 관절운동 이상 증상 발생에 따른 조정 사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무릎 연골수술 후 관절운동 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 조정중재사례].

구분		내용
사례		신청인은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X병원 등을 거쳐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MRI 검사를 통해 우측 무릎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음 → 환자는 관절경을 통하여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대퇴골 외과 미세골절술 등을 시행 받음 →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인 우측 무릎에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약 처방 및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X병원에서 다른 주사 치료를 받았고, 우측 무릎 CT 검사 결과 3-4단계의 심한 골관절염이 관찰되어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계획한 사례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수술 후 통증, 무릎 뻑뻑함 등의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였고 타 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는 등 이 사건 수술 과정상 과실을 주장 및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
	피신청인 (의료진)	수술 전 환자의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수술 과정 상 문제는 없었으나 수술 이후 퇴행성 질환의 진행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였다고 주장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여부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여부 √ 설명의 적절성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진료상 과실 유무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정형외과적 진단 및 시술과 경과 관찰에 따르는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 없음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는 수술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적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료진로부터 설명을 들어 인식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환자의 수술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
조정 결과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2,000,000원 지급

(응급의학과) 뇌경색 조기진단 실패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정 사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뇌경색 조기진단 실패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및 경과 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 조정중재사례].

구분		내용
사례		망인(환자)이 자전거 사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 X-ray, CT, MRI를 촬영하고 신경외과에서 영상을 확인 → 보호자가 원하는 과의 진료가 어려워 X병원으로 전원 → X병원에서 다시 촬영한 MRI에서 뇌경색 소견을 보이나 중환자실 병상이 없어 다시 피신청인 병원으로 이송 →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2차 내원) 뇌 혈관 CT 촬영 후 뇌경색진단 이후 경피적 혈전제거술 시행 이후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처치를 받다가 5일 뒤 사망한 사례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1차 응급실 내원 시 뇌 CT 및 MRI를 촬영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뇌경색 소견이 명백함에도 뇌경색 조기진단 실패, 뇌간부전에 의해 사망, 담당 의사가 뇌 MRI를 촬영하고도 보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
	피신청인 (의료진)	환자의 진단 및 치료의 진행 과정에서 diffusion MRI를 확인하지 못하여 좀 더 빨리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신경외과 응급 수술 중 환자 재전원으로 인해 진료가 약간 지연된 점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주장
사안의 쟁점		√ 응급실 내원 시 진단 및 조치의 적절성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료진의 조치상 과실 유무	망인이 최초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MRI 검사 결과를 통해 급성 뇌경색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MRI 영상 중 일부 영상만을 확인하고 잘못 진단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및 경과 관찰상 과실이 인정됨
조정결과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 측)에게 91,515,000원을 지급

(내과) 위암을 위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건에 대한 조정 사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위암을 위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 조정중재사례].

구분		내용
사례		신청인(위암으로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 병력이 있음)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시행 → 이후 다시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고 위석 가능성 설명 받음 → X대학교병원 외래 진료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사한 내시경 검사 확인 후 암 재발 가능성이 의심되어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시행 → 위암의 재발 확인한 사례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위암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12개월 사이에 3번이나 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았음에도 의료진의 오진으로 위암이 복막까지 전이되었으며, 조기에 위암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
	피신청인 (의료진)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시경 조직검사 상 위암 재발 소견이 없었고, 세 번째 내시경 당시 위암을 진단하기 쉽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마지막 내시경 시행 당시 피신청인 측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하였고 이후 타 병원에서 위암이 진단된 시기가 불과 1개월 이후인 사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 마지막 내시경 시행 당시 신청인의 위암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 예후나 치료 방법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
사안의 쟁점		√ 위내시경 검사 및 진단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료진의 조치상 과실 유무	√ 병원 의료진의 세 번째 내시경 검사는 적절하지 않음 √ 진단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한 조직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면 질환의 진행이 조금이나마 억제되었을 것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됨
조정결과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

※ 그 밖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더 다양한 조정 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조정중재사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중재 신청

▪ 의료분쟁 당사자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조정절차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Q. 조정·중재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
> **A.**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 3. 변호사
>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
> ※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50면 참조).

중재의 처리 및 절차

▪ 의료분쟁 중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24면).

순서 (7)	절차	내용
1	중재 신청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 신청**
2	조정부 선택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 선택
3	감정부의 조사, 감정서 작성·송부	√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 요구 √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4	중재사건 심리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 (당사자간 구술심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제외)**
5	중재절차 중 화해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절차 중단 및 당사자들 요구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 형식으로 작성 가능
6	중재판정	**조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을 함**

▪ 중재절차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이 적용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취소

▪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중재법」 제36조제1항, 제3항).

> ※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환경분쟁 해결』의 <유형별 분쟁조정 처리절차-중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재의 법적 효력

▪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중재 수수료

▪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부과됩니다. 수수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안내-수수료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3.3.1.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90조 참조).

▹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생명·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의 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2021), 7면).

① 의료인의 과실

② 위법성(권리의 침해)

③ 손해의 발생

④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 민사소송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소송 이해하기-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의사의 설명의무·주의의무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조산·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상해, 치료 지연 등 환자의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6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2021), 8면

참조).

구분	내용
고지 설명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 검사결과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설명의무**
조언 설명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합병증·부작용·후유증)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의무** **·조언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
지도 설명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과 같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에 대한 설명의무**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발생**

▪ 참고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에서 “수술등”이라 함)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제2항).(다만 응급 상황은 제외)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의료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 및 「의료법 시행령」 별표 2).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사 또는 평균적인 의사가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말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9면 참조).

> **※ 의사의 주의의무: 결과예견의무 및 결과회피의무**
>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을 검토해야 하고,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3.3.2.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

민사소송 판례를 통해 의료분쟁 해결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받는 과정에서 넘어진 이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

▪ 대법원이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받는 과정에서 넘어진 이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환자의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의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갑자기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입원을 기다리는 도중 양쪽 팔다리에서 나타난 경련 증상에 대해 의사는 항경련제만을 투여하였고 이튿날 뇌 CT 검사에서 뇌출혈 사실이 발견되었고 혈종제거술을 하였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함

√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담당 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환자의 건강 유지와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 의사가 바뀌는 경우 나중에 담당할 의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함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사례

▪ 대법원이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사건에 대해, 환자가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것에 대하여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므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함

√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의료인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

▪ 대법원이 의료인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환자의 이상증세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합병증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 사지가 뻣뻣하게 굳으며 혼수상태에 빠져들었고 자극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다음 날 감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

√ CT 촬영으로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한 이상 기존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하거나 적어도 기존 조치를 유지하면서 임상적 뇌혈관연축의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야 함

√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하고서도 니모디핀의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점 및 원고의 이상증세에도 불구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됨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

▪ 대법원이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환자의 주관적 증상 및 후유증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 대한 예견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결과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등의 후유장해를 입은 사례

√ 해당 수술의 후유증 발생 위험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건강의 침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해당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이고 환자의 주관적 증상 및 후유증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 따른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됨

환자의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 약물을 사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례

▪ 청주지법이 환자의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 약물을 사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환자의 과거병력

등을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는 환자가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의료진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례

√ 과거병력 및 투약력을 문진이나 기타 방법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함으로써 의사의 잘못된 주사약 처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

√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

※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한 더 많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판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4. 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3.4.1.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소송 청구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형법」 제268조).

의료인의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형법」 제233조)

▪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형법」 제234조)

▪ 업무상 비밀 누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형법」 제317조제1항)

▪ 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 제347조)

Q.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고소·고발은 어려운가요?

A.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료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형사고소·고발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고소·고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2.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소송 사례

형사소송 판례를 통해 의료분쟁 해결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치과에서 수면치료를 위한 마취과정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 대법원이 치과에서 수면치료를 위한 마취과정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개원 치과의원에 호흡정지를 대비한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도13089, 판결)

생후 33개월 소아 환자가 어금니와 앞니에 있는 치아우식증을 치료하고자 수면치료를 하기로 하고 중추신경억제제인 포크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을 투약하고 환자가 잠이 들자 그물과 담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속박한 상태로 치료 중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례

√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면마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포크랄, 리도카인 등의 약물 용량이 허용범위를 넘지 않았고, 위 약물들의 혼합방법 역시 임상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진정법과 다르지 아니하여 위 약물들 사용에 관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피고인에게 당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경, 암부백, 제세동기 등 응급처치 장비와 약물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의료진이 수면마취를 유도하는 약제들의 부작용이나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을 설명하였다면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한의원에서 뜸 시술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추가 문진이나 화상치료를 하지 않은 사례

▪ 대구지법이 한의원에서 뜸 시술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추가 문진이나 화상치료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의료진은 시술 이후 발생한 화상에 대해 추가 문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흉터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대구지법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환자가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례

√ 뜸 시술 시 환자 상태, 병증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한의사는 우선적으로 시술 전

병력 청취 과정 중에서 켈로이드성 피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료과정에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시간이나 방법 등을 조정하여 피부에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환자의 흉터는 켈로이드 흉터로 통상적인 범주보다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의료인은 수사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시술 전에 진맥을 보고 문진을 하였는데 피부체질에 관해서는 사전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환자가 한방 치료를 중단하고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것은 뜸 시술을 시행한 날부터 최소한 100일이 지난 후로 그때 이미 뜸 자국이 피부가 돌출된 상태로 외관상 아물어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환자가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여 소염제 등을 사용한 것과 환자의 뜸 자국이 돌출된 것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인정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례

▪ 대법원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시행한 의료행위(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중등도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부이식수술의 필요성을 환자와 환자의 남편에게 설명하였으나,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고령이고 간경화 환자이어서 수술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그동안 화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해 온 의료진의 의학적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피부이식수술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여기고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중 간경화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 의료진은 환자의 상황과 자신의 지식·경험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서 비수술 요법 대신 수술요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의료분쟁과 관련한 더 많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판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